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29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4. 6. 25.
3. 회부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금액 42만원과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추가로 지원되는 생계지원금 10만원이 전부임. 따라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공공요금의 지원) ① 국가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요금의 지원 방법·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전기통신요금에 대한 감면 외에도 개별 법령, 약관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¹⁾

□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노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장애인·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 등의 경우 각 근거 규정에 의해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요금 감면혜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지침 또는 약관에 근거하고 있어 다른 법률로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을 통해 법령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면서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현재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 국가유공자(4급 이하) 및 지원공상군경²⁾ 및 보훈보상대상자³⁾의 경우도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의 경우 보훈대상자의 신체적 희생 여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 참고 1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관련 현황” 참조(p.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의2 적용대상자

3)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공무원

- 참고로, 전체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약 4,585억원(연 9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⁴⁾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별 공공요금 감면 근거 법령 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률 목적의 달성 및 구체적 지원 대상 특정 등 실행력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상이등급을 받았음에도 혜택에서 제외된 상이 국가유공자(4급 이하) 및 지원공상군경, 보훈 보상대상자 등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가 요금 경감대상에 포함될 시 약 44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상, 국가유공자(4~7급, 비상이), 5.18유공자(4~14급)가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34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7

4) 참고 2 “개정안에 따른 소요액 추계” 참고(p.7.)

참고 1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현황

□ 감면내용 및 근거규정

구분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관련법령
전기요금 감면	▪ 가정용 전기요금 감액 (월평균 17,000원 한도)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5·18민주부상자 1~3급	▪ 전기공급약관 제67조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요금 감면	▪ 취사·난방용 가스 할인 (취사·난방용 월평균 30,600원, 취사용 월 1,680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5·18민주부상자 1~3급	▪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자부)
지역난방 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 월5천원 감면 (연1회 감면총액 지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 공급지역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5·18민주부상자 1~3급	▪ 열공급규정 제46조 제1항제9호 (한국지역난방공사)

※ 수도요금은 「수도법」 상 할인대상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아 동법 시행령 제53조2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참고 2

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 감면대상 인원 예상 추이(참전유공자)

(단위: 명)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참전유공자 인원	184,660	171,733	159,712	148,532	138,135

* 참전유공자 사망률 7.0%('19년~'23년 참전유공자 증감율 평균) 반영

* 참전유공자 중 공공요금 감면 중복대상자(국가유공상이자1~3급 등) 제외

□ 추가 재정 소요액('25년~'29년)

(단위: 천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전기	37,670,640	35,033,532	32,581,248	30,300,528	28,179,540
도시가스	67,807,152	63,060,358	58,646,246	54,540,950	50,723,172
합계	105,477,792	98,093,890	91,227,494	84,841,478	78,902,712

※ 감면액 단가 기준('24년 지침·약관)

- 전기 : 가정용 전기요금 월 16,000원, 연 192,000원

- 도시가스 : 취사·난방용 월 평균 30,600원, 연 367,200원